

제4호(2011.12.22.)

## 한·미 FTA, 농업분야의 영향과 과제

최 세 균

|                      |    |
|----------------------|----|
| 1. 어떻게 진행되었나? .....  | 3  |
| 2. 농산물 협상 결과는? ..... | 6  |
| 3. 예상되는 영향 .....     | 10 |
| 4. 정부의 대책 .....      | 14 |
| 5. 향후 검토 과제 .....    | 17 |

내용 문의: **최세균** 선임연구위원 02-3299-4246 skchoi@krei.re.kr  
자료 문의: **원동환** 전문원 02-3299-4274 wondh@krei.re.kr

- 「KREI 농정포커스」는 농업·농촌의 주요 동향 및 정책 이슈를 분석하여 간략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 이 자료는 우리 연구원 홈페이지([www.krei.re.kr](http://www.krei.re.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 요 약 ◇

한·미 FTA는 2006년 6월에 협상이 개시되어 2007년 4월에 타결된 이후 재협상 과정을 거쳐 2010년 11월에 최종적으로 타결됨. 2011년에 평가한 한·미 FTA로 인한 농업부문 생산액 감소는 15년차에 1조 2,354억 원, 15년간 총 12조 2,252억 원(연평균 8,150억 원)임. 대부분 품목의 이행이 완료되는 15년차를 기준으로 축산업의 피해가 전체 피해의 67%를 차지함(8,193억 원). 다음으로 피해가 큰 품목은 과수로 전체의 24%(3,012억 원)이고, 채소 및 특작 7%(853억 원), 곡물 2%(295억 원)의 순임.

2010년에 이루어진 재협상 결과 일부 돼지고기(냉동/기타)의 관세철폐 시기가 2014년 1월 1일에서 2016년 1월 1일로 연기되었음. 현재 25%의 관세를 2012년에 16%에서 시작하여 매년 균등하게 감축하여 2016년에 철폐함. 재협상 결과 우리나라 양돈 산업의 피해는 2012~16년 기간에 약 1천억 원 감소할 전망

한·미 FTA 보완대책으로 정부는 농업부문에 21조 4천억 원 규모의 투융자를 실시하고 있음. 단기적 피해보전(피해보전직불 및 폐업지원)에 6% 정도가 쓰이고 나머지는 경쟁력 강화와 농업 체질개선에 쓰이게 됨. 축산업 분야에 가장 많은 투자가 이루어질 예정이며, 축사시설 현대화,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분뇨처리시설 건설, 송아지 생산 안정화 사업, 가축개량사업, 유제품 개발 및 생산시설 지원, 축산자조금사업 지원 등이 주요 사업임.

피해보전직불(가격차 보상) 제도는 수입 증가로 가격이 지난 5년간의 가격 가운데 최고가와 최저가를 제외한 3년 평균가격의 85%(발동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발동되며, 보상수준은 발동기준가격과 현재 가격과의 차이의 90%임. 폐업보상금은 폐업 대상 작목의 연간 순수익의 3배(3년)임. 제도 적용 기간은 협정 이행으로부터 피해보전직불 10년간, 폐업지원 5년간임.

폐업지원 기간이 이행 초기로 한정된 점, 피해보전직불 제도의 작동 가능성이 낮은 점, 폐업지원제도에 품목별 특성(소득률과 자본회전률 차이 등)이 반영되지 않은 점, FTA별 지원대책의 중복성에 따른 문제 등은 보완되어야 할 과제임. 인력육성 및 제도 개선 등 소프트웨어 측면에 대한 투자 확대로 기존의 시설투자, 기술개발 등 하드웨어 측면 대책과의 시너지 효과 극대화 필요. 보완대책의 수립, 집행, 평가, 수정 및 보완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 구축도 필요



## 1. 어떻게 진행되었나?

### □ 한·미 양국은 2006년 6월 초부터 협상을 개시

- 우리나라는 2006년 1월 18일 대통령 신년연설을 통해 한·미 FTA 협상 의지를 밝힌 이후 그 해 2월 2일에 한·미 FTA 공청회와 대외경제장관 회의를 거쳐 2월 3일 협상개시를 선언
- 미국은 국내법 절차에 따라 협상개시 선언 90일 이후에나 협상이 가능하고 협상 타결 이후에도 행정부가 협정에 서명하기 위해서는 서명 90일 전까지 대통령이 의회에 서명 의사를 통보하여야 함.
  - 협상 타결 결과가 의회에 보고되면 90일 간의 검토 기간을 거쳐 비준에 들어갈 수 있음.
- 미국 의회가 행정부에 부여한 무역촉진권한 또는 신속협상권한(Trade Promotion Authority, TPA)<sup>1)</sup>의 만료일이 2007년 6월 30일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미국은 한·미 FTA 협상을 2007년 4월 2일까지 타결하고 의회에 보고해야 TPA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됨.
- 우리나라는 2006년 5월에 지방 자치단체장과 의회의원을 선출하는 선거가 있었으며, 따라서 양국의 이러한 법절차와 국내 정치 일정 등을 고려하여 양국은 2006년 6월 초에 협상을 개시

1) 일반적으로 미국 정부가 관세 및 국내법에 변경을 초래할 무역 협정을 체결한 경우, 이와 관련된 법안은 의회에 제출되고, 의회는 법안의 승인 과정에서 무역협정을 수정할 권한을 갖게 됨. 이렇게 되면 행정부는 수정된 협정내용을 가지고 협정체결국들과 다시 협상을 벌여야 하고 이 경우 협상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으며 최악의 경우에는 협정이 완전히 무산될 수도 있음. 그러나 의회가 대통령에게 TPA 권한을 부여한 경우, 미국 의회는 행정부의 협상결과를 일정기간(90일) 내에 수정없이 찬반결정만을 하게 됨.

---

□ 2007년 4월 협상결과에 대한 재협상 후 2010년 12월에 최종 타결

- 한·미 양국은 협상선언 이후 미국 의회의 검토 기간 중에 비공식 협의를 통해 협상과 관련된 사항들을 사전에 점검하는 협의회를 개최하여 협상일정, 협상분과 등에 합의
- 사전 비공식 협의에서 합의된 협상분과는 ① 상품무역, ② 농업, ③ 섬유, ④ 원산지 및 통관, ⑤ 무역구제, ⑥ 위생검역, ⑦ 기술장벽, ⑧ 서비스, ⑨ 금융서비스, ⑩ 통신 및 전자상거래, ⑪ 투자, ⑫ 정부조달, ⑬ 경쟁, ⑭ 지적재산권, ⑮ 노동, ⑯ 환경, ⑰ 분쟁해결 및 투명성 등의 17개 분야
- 공식 협상은 2006년 6월부터 양국을 오가며 2007년 3월까지 여덟 차례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공식 협상에서 합의되지 않은 중요한 쟁점들은 2007년 3월 19일부터 4월 1일까지 개최된 고위급 협상을 통해 협의
- 공식 협상이 타결된 이후 미국 측의 자동차 부분에 대한 양허 수정을 위한 재협상 요구가 있었으며, 재협상은 2010년 12월에 타결
  - 재협상 대상은 자동차, 돼지고기, 제약 등 일부 품목에 한정

□ 한·미 양국은 국회 비준과 대통령 서명을 거쳐 2012년 3월 말까지 협정 발효를 목표로 절차를 진행 중

- 한·미 FTA 이행법안에 대한 미국 의회 비준은 2011년 10월 12일에 완료되었으며, 10월 21일에 대통령이 서명함으로써 이행을 위한 절차가 완료
- 우리나라는 한·미 FTA 이행법안에 대한 국회 비준이 2011년 11월 22일에 이루어졌고, 대통령의 서명은 11월 29일에 완료
- 이에 따라 한·미 양국은 2012년 3월말까지 협정 발효를 목표로 절차를 진행하고 있음.

표 1. 한·미 FTA 협상 경과

| <u>일 자</u>               | <u>주요 내용</u>        |
|--------------------------|---------------------|
| ○ 2006. 2. 2.            | 공청회                 |
| ○ 2006. 2. 3.            | 협상개시 선언             |
| ○ 2006. 3. 6. ~ 7.       | 비공식협의를(미국측 한국 방문)   |
| ○ 2006. 4. 17. ~ 18.     | 비공식협의를(한국측 미국 방문)   |
| ○ 2006. 6. 5. ~ 9.       | 1차 협상(미국)           |
| ○ 2006. 7. 10. ~ 14.     | 2차 협상(한국)           |
| ○ 2006. 9. 6. ~ 9.       | 3차 협상(미국)           |
| ○ 2006. 10. 23. ~ 27.    | 4차 협상(한국)           |
| ○ 2006. 12. 4. ~ 8.      | 5차 협상(미국)           |
| ○ 2007. 1. 15. ~ 19.     | 6차 협상(한국)           |
| ○ 2007. 2. 10. ~ 15.     | 7차 협상(미국)           |
| ○ 2007. 3. 5. ~ 6.       | 농업분과 고위급 협상(미국)     |
| ○ 2007. 3. 8. ~ 12.      | 8차 협상(한국)           |
| ○ 2007. 3. 19. ~ 30.     | 고위급 협상(미국, 한국)      |
| ○ 2007. 3. 31. ~ 4. 1.   | 협상시한 연장. 고위급 협상(한국) |
| ○ 2007. 4. 2.            | 협상타결                |
| ○ 2010. 11. 30. ~ 12. 3. | 재협상 타결              |
| ○ 2011. 10. 12.          | 미 상·하원 본회의 이행법안 통과  |
| ○ 2011. 10. 21.          | 미 대통령 이행법안 서명       |
| ○ 2011. 11. 22.          | 한-미 FTA 비준동의안 국회 통과 |
| ○ 2011. 11. 29.          | 대통령 한-미 FTA 이행법안 서명 |

## 2. 농산물 협상 결과는?

- 농업분과의 협상대상 품목 수는 1,531개이며, 민감성이 낮은 품목은 대부분 단기에 관세를 철폐하는 반면 민감한 품목은 관세 철폐 기간을 최장 20년까지로 설정
  - 관세 철폐 기간이 가장 긴 것은 후지사과와 동양배로 20년, 그밖에 장기 철폐 유형으로 10년, 12년, 15년, 16년, 17년, 18년 등이 있음.
  - 특정일을 기준으로 관세 철폐를 정한 경우도 있고, 현행 관세는 유지하지만 관세율 쿼터(TRQ)를 제공함으로써 관세 철폐와 유사한 시장 개방 효과를 나타내는 양허방식도 도입

### □ 축산물

- 쇠고기는 관세를 15년에 걸쳐 철폐하되 수입이 크게 증가할 경우 이행 기간 중 긴급수입제한조치(긴급관세, ASG) 제도를 적용
  - ASG 적용 대상 품목은 냉장 및 냉동 쇠고기 6개 품목으로 대부분의 중요한 쇠고기가 포함
  - ASG 발동기준 물량은 1년차 27만 톤에서 매년 6천 톤씩 증량하여 15년차에는 35만 4천 톤
  - ASG 발동 수준은 5년차까지는 실행세율만큼 인상, 6~10년차까지는 실행세율의 75% 수준까지 인상, 11~15년차까지는 실행세율의 60%까지 인상
- 돼지고기는 냉장육과 냉동육의 관세 철폐 기간이 다르게 결정되어 냉장육(삼겹살, 갈비/목살 등)의 관세는 10년, 냉동육(기타)의 관세는 2016년 1월 1일까지 철폐하게 됨.
  - ASG는 냉장육에 대하여만 10년간 적용할 수 있으며, ASG 발동기준 물량은 1년차 8,250톤을 시작으로 매년 6%씩 증량하여 10년차에 13,938톤으로 증가
  - ASG 발동 수준은 1~5년차에는 실행세율까지 인상하고 6~10년차에는 실행세율의 70%에서 매년 5% 포인트씩 인하하여 10년차에는 실행세율의 50%까지 인상할 수 있음.



- 닭고기는 부위별, 냉동 또는 냉장 상태를 구분하여 관세 철폐 기간에 차등을 두었음.
  - 통닭(냉동 기타 제외) 및 냉동 닭가슴살과 닭날개는 12년에 걸쳐 관세를 철폐하고, 통닭(냉동 기타), 냉장 닭가슴, 닭다리, 닭날개 등 대부분의 닭고기는 10년에 걸쳐 관세 철폐
- 낙농품 가운데 가장 민감하게 다루어진 것은 분유, 유장, 치즈 등으로 탈지분유, 전지분유, 연유는 관세율 쿼터를 제공하는 대신 현행관세는 유지
  - 유장은 초기 관세를 20%에서 시작하여 10년에 걸쳐 철폐하고 TRQ는 3천 톤에서 매년 3%씩 증량(사료용 유장은 즉시철폐). 따라서 9년차의 TRQ는 3,800톤이며, 10년차에는 완전히 개방
  - 분유와 연유의 TRQ는 5천 톤에서 시작하여 매년 3%씩 증량(5년차에 5,628톤)
  - 치즈의 관세 철폐 기간은 체다치즈 10년, 기타 치즈 15년이며, TRQ는 7천 톤에서 시작하여 매년 3%씩 증량(무관세)
- 천연꿀은 현행 관세(243%)를 유지하되 TRQ(무관세)를 200톤 제공하고 TRQ는 매년 3%씩 증량
  - 인조꿀 등 벌꿀 관련 제품의 관세는 10년에 걸쳐 철폐됨.

## □ 과일 및 과채류

- 현재 수입이 이루어지고 있는 품목이 식물검역 문제 등으로 수입이 이루어지지 않는 품목보다 민감하게 다루어짐.
- 오렌지는 계절관세 형태로 9월부터 2월까지의 현행 관세를 그대로 유지하고 3월부터 8월까지의 초기 년도에 현재 50%인 관세를 30%로 인하하여 7년 간 철폐해 나가는 형식을 택함.
  - 오렌지는 현행 관세가 유지되는 기간에는 TRQ를 2,500톤에서 시작하여 매년 3%씩 증량
  - 감귤류의 관세는 15년에 걸쳐 철폐

- 포도의 관세 철폐도 계절관세 형태로 5월부터 10월 15일까지는 17년간 관세를 철폐하고, 10월 16일부터 4월까지의 관세를 45%에서 시작하여 5년 간 철폐
- 우리나라의 주요 사과 품종인 후지사과의 관세철폐 기간은 20년, 기타 품종의 관세는 10년에 걸쳐 철폐
  - ASG는 후지의 경우 23년, 기타는 10년 간 적용, ASG 발동기준은 초기에 9,000톤에서 시작하여 12,000톤으로 증량
- 배는 사과와 유사한 방식으로 개방
  - 동양배의 관세 철폐 기간은 20년, 기타 품종의 배는 10년에 걸쳐 관세가 철폐되나 ASG는 적용되지 않음.
- 복숭아와 단감의 관세 철폐 기간은 10년, 키위는 15년, 체리의 관세는 이행 초기연도에 즉시 철폐, 견과류 가운데 미탈각 호도는 15년, 탈각 호도는 6년에 걸쳐 관세 철폐, 밤과 잣의 관세 철폐 기간은 15년임.
  - 우리나라의 국내 생산이 거의 없는 피스타치오와 아몬드 관세는 즉시 철폐, 그밖의 주요 품목별 관세 철폐 기간은 은행 10년, 토마토 7년, 초본류딸기 9년, 나무딸기 12년 등

## □ 곡물

-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농산물인 쌀은 협상 초기부터 협상의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하였고, 미국도 우리나라의 입장을 수용하여 한·미 FTA에서 쌀에 대한 시장개방은 이루어지지 않았음(쌀 관련 16개 품목).
- 대두는 가공용의 개방 폭을 크게 하고 가정용은 개방 폭을 최소화
  - 착유 및 대두박용, 장유용 대두의 관세는 즉시 철폐되고, 가정용(콩나물/기타)은 현행관세를 유지하되 무관세 쿼터를 이행 초기연도에 2만 5천 톤 제공하고 이를 매년 3%씩 증량
- 감자는 가정용의 경우 코드를 분리하여 현행 관세를 유지하되 무관세

쿼터를 3천 톤에서 시작하여 매년 3%씩 증량

- 기타 가공용(감자 칩 등) 감자의 관세는 5월부터 11월까지는 7년 유예 후 8년간에 걸쳐 철폐, 12월부터 4월까지는 즉시 철폐
- 감자분의 관세는 10년에 걸쳐 철폐되며, 이행 기간 중에 ASG가 적용되고 발동기준 물량은 5천 톤에서 시작하여 10년차까지 6,524톤으로 증가

- 옥수수의 관세는 7년에 걸쳐 철폐되고, 이행 기간 중 ASG 적용
  - 쿼터량은 파콘용 옥수수의 경우 2,556톤에서 11,246톤으로 증량, 기타는 93,774톤에서 412,603톤으로 증량. ASG 발동기준은 초기 187,547톤에서 시작하여 최종연도 412,603톤으로 증가
- 보리, 맥주보리, 메밀, 녹두, 팥 등 기타 곡물의 관세철폐 기간은 대부분 15년이며, 이들 품목은 소량의 TRQ가 제공되는 경우가 많음.
  - 보리(겉보리, 쌀보리)의 TRQ는 2,500톤에서 시작하여 3,299톤으로 증량(15년차), ASG는 15년간 적용
  - 맥아 및 맥주맥 TRQ는 9천 톤에서 시작하여 11,642톤으로 증량(15년차), ASG는 15년간 적용
  - 고구마의 관세 철폐 기간은 10년

## □ 채소 및 특작

- 고추, 마늘, 양파, 생강 등 중요한 양념채소의 관세 철폐 기간은 15년이고 긴급관세(ASG)가 적용됨. ASG 적용 기간은 18년임.
- 인삼은 핵심 품목 7개(수삼, 백삼과 홍삼의 본삼, 미삼, 잡삼)의 관세 철폐 기간은 18년이며, ASG는 20년간 적용됨. 무관세 쿼터는 초기연도에 5.7톤을 시작으로 매년 3% 증량이 이루어짐. 인삼 가공품은 대부분 15년 관세 철폐에 ASG 18년이 적용됨. 인삼의 ASG 발동기준은 초기 62톤, 최종연도 103톤임.

---

### 3. 예상되는 영향

#### 3.1. 분석 방법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자체 개발한 총량모형(KASMO 2008) 이용
  - KASMO는 거시변수 부문, 투입재가격 부문, 재배업 부문, 축산 부문, 총량 부문 등 크게 5개 부문으로 구성
  - 거시 부문은 인구, 국제 유가, 환율, GDP, 물가지수 등을 포함
  - 재배업은 곡물, 채소, 과일, 특용작물, 기타로 구성
- 기준 추정치(baseline)를 먼저 추정하고 정책변화에 따른 추정치를 계산하여 그 차이를 FTA 등 정책 변화의 영향으로 추정하는 형태
  - 기준 추정치(baseline): 한·미 FTA가 없는 현재 상황이 지속된다는 가정 하에서 1980년부터 2008년까지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2026년까지 추정
- 대체효과 반영: 품목별로 수입산과 국산 간의 대체효과, 미국과 기타 국가 간의 수입선 대체 효과를 고려하도록 방정식 체계를 설계
  - 수요의 대체효과와 생산에 있어서의 경합효과 고려
- 과일, 과채류 등과 관련된 검역에 의한 수입제한조치는 고려하지 않음
- 가공식품 미반영: 모형 내에 가공식품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 따라서 가공식품(제과, 당류, 면류, 주류, 음료 등)에 미치는 영향과 가공식품 수입으로 인한 신선 농축산물 생산액 감소는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반영되지 않았음.
  - 다만 과일 농축액, 주스 등 신선 농산물과 관련이 깊은 1차가공품은 생과일로 환산하여 분석에 포함.

### 3.2. 영향 추정 결과

#### □ 이행 10년차에 농산물생산액 약 1조원 감소 추정

- 한·미 FTA 협상 결과가 이행될 경우 향후 미국산 농산물 수입으로 우리나라 농산물 생산액은 발효 후 5년차에 6,785억 원, 10년차에 9,912억 원, 15년차에 1조 2,354억 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됨.
- 이행 15년 이전에 이행기간이 종료되는 품목의 생산액 감소를 15년까지 연장하여 계산한 15년 평균 생산액 감소는 8,150억 원(이행기간 마지막 연도 생산액 감소를 15년까지 연장)
  - 15년간 누적 생산액 감소는 12조 2,252억 원

#### □ 농업생산액 증가로 2007년보다 피해액이 크게 계측

- 2007년 영향 추정 결과보다 피해액이 크게 나타나는 주요 원인은 최근 농산물 가격 상승과 가축 사육두수의 급격한 증가 등으로 농업 생산액이 증가하였기 때문
  - 예를 들면, 돼지 생산액은 2006년 3조 6천억 원에서 2008년 4조 1천억 원으로, 한우는 동기간 생산액이 2조 8천억 원에서 3조 3천억 원으로 증가
- 사과, 배, 복숭아 등 식물검역조치에 의해 수입이 금지된 품목들의 피해액은 검역조치가 해제될 경우를 가정하여 추정한 것임.
- 고추, 마늘, 양파 등 수입이 이루어지지 않는 품목은 기타 피해가 발생하는 발작물과의 재배지 경합에 의한 간접피해를 나타냄.
  - 예를 들면, 고추는 주로 감자, 옥수수, 고구마 등과 경합하고, 양파와 마늘은 보리의 피해로 간접적인 영향을 받음.

표 2. 한·미 FTA에 따른 주요 품목별 생산액 감소 추정

단위: 억 원

| 구분        |      | 연간    |       |        | 평균    |       |        | 15년<br>합계 | 15년<br>평균 |
|-----------|------|-------|-------|--------|-------|-------|--------|-----------|-----------|
|           |      | 5년차   | 10년차  | 15년차   | 1~5년  | 6~10년 | 11~15년 |           |           |
| 곡물        | 보리   | 11    | 23    | 45     | 7     | 18    | 35     | 295       | 20        |
|           | 두류   | 164   | 177   | 202    | 118   | 171   | 191    | 2,399     | 160       |
|           | 기타   | 31    | 49    | 49     | 21    | 46    | 49     | 576       | 38        |
|           | 소계   | 206   | 249   | 295    | 146   | 234   | 274    | 3,270     | 218       |
| 채소,<br>특작 | 마늘   | 31    | 38    | 53     | 31    | 35    | 46     | 560       | 37        |
|           | 양파   | 24    | 49    | 106    | 19    | 37    | 79     | 674       | 45        |
|           | 고추   | 111   | 145   | 158    | 98    | 133   | 156    | 1,934     | 129       |
|           | 과채류  | 372   | 412   | 412    | 263   | 395   | 412    | 5,348     | 357       |
|           | 인삼   | 25    | 42    | 57     | 20    | 35    | 51     | 531       | 35        |
|           | 기타   | 45    | 56    | 68     | 41    | 52    | 63     | 781       | 52        |
|           | 소계   | 608   | 742   | 853    | 472   | 686   | 808    | 9,828     | 655       |
| 과수        | 사과   | 599   | 672   | 760    | 484   | 636   | 732    | 9,260     | 617       |
|           | 배    | 396   | 454   | 498    | 293   | 437   | 480    | 6,052     | 403       |
|           | 포도   | 439   | 585   | 731    | 326   | 526   | 673    | 7,625     | 508       |
|           | 감귤   | 665   | 730   | 730    | 461   | 727   | 730    | 9,589     | 639       |
|           | 복숭아  | 150   | 221   | 221    | 122   | 191   | 221    | 2,671     | 178       |
|           | 기타   | 66    | 72    | 72     | 51    | 71    | 72     | 965       | 64        |
|           | 소계   | 2,314 | 2,735 | 3,012  | 1,737 | 2,586 | 2,909  | 36,162    | 2,411     |
| 축산        | 쇠고기  | 1,040 | 2,463 | 4,438  | 594   | 1,836 | 3,577  | 30,036    | 2,002     |
|           | 돼지고기 | 1,640 | 2,065 | 2,065  | 1,008 | 1,803 | 2,065  | 24,378    | 1,625     |
|           | 닭고기  | 589   | 1,087 | 1,087  | 389   | 836   | 1,087  | 11,557    | 770       |
|           | 유제품  | 297   | 430   | 430    | 259   | 372   | 430    | 5,306     | 354       |
|           | 기타   | 91    | 143   | 173    | 64    | 116   | 163    | 1,716     | 114       |
|           | 소계   | 3,656 | 6,187 | 8,193  | 2,314 | 4,963 | 7,322  | 72,993    | 4,866     |
| 총계        |      | 6,785 | 9,912 | 12,354 | 4,668 | 8,470 | 11,312 | 122,252   | 8,150     |

### 3.3. 재협상에 따른 양돈산업 영향

- 2007년 한·미 FTA 타결 당시 돼지고기는 냉장육 2개 세번(삼겹살, 갈비/목살)을 제외한 나머지 21개 세번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 관세를 철폐하기로 합의
  - 냉장육 2개 세번의 관세 철폐 기간은 10년, 농산물 셰이프가드(ASG) 적용. 이들 세번의 지난 5년간(2005~09년) 수입 비중은 8.0%
- 재협상에서 2014년 1월 1일부터 관세를 철폐하기로 되어 있던 돼지고기 1개 품목(냉동 기타. HSK 0203299000)의 관세를 2016년 1월 1일부터 철폐하되 현재 25%의 관세를 2012년에 16%에서 시작하여 매년 균등하게 감축하기로 합의
  - 재협상에서 관세철폐 기간이 조정된 미국산 냉동돼지고기의 수입 비중은 전체 대미 수입의 84.5%

#### □ 재협상 결과 양돈산업 피해는 10년간 1천억 이상 감소

- 재협상 결과를 반영한 양돈 산업의 생산액 감소는 10년간 1조 4,056억 원, 연평균 1,406억 원으로 추정되며, 이는 원협정에 비해 10년간 1,340억 원이 감소한 것임.
  - 2012~16년 기간에 피해액 차이는 1,240억 원(재협상 5,041억 원, 원협상 6,281억 원)으로 재협상에 반영된 돼지고기/냉동기타의 수입 비율 84.5%를 적용하면 1,048억 원임.

표 3. 협상 결과별 양돈 생산액 감소 추정

|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10년    |       | 15년    |       |
|-----|-----|-----|-------|-------|-------|-------|-------|-------|-------|-------|--------|-------|--------|-------|
|     |     |     |       |       |       |       |       |       |       |       | 합계     | 평균    | 합계     | 평균    |
| 원협상 | 199 | 844 | 1,828 | 1,764 | 1,646 | 1,585 | 1,675 | 1,806 | 1,955 | 2,094 | 15,396 | 1,540 | 25,868 | 1,725 |
| 재협상 | 216 | 627 | 1,124 | 1,435 | 1,640 | 1,575 | 1,662 | 1,785 | 1,928 | 2,065 | 14,056 | 1,406 | 24,378 | 1,625 |

\* 15년 합계와 평균은 돼지고기 관세 철폐 기간이 10년이지만 다른 품목과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연장할 경우를 의미함.

## 4. 정부의 대책

### □ 한·미 FTA 농업부문 국내대책 투융자 규모는 총 21조 4천억 원

- 2007년 협상타결 당시 정부가 발표한 농업부문 보완대책에 제시된 투융자 규모는 10년간(2008~2017년) 20조 4천억 원
  - 이는 2007년에 추정한 15년간의 피해액 10조 470억 원에 기초
- 2011년에 변화된 경제여건을 반영하여 다시 추정한 결과 피해규모는 12조 2천억 원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대응하여 정부는 1조 원의 추가적인 투융자 계획을 발표

### □ 투융자 정책 외에 2007년 수립한 대책의 대폭 보완

- 정부는 시장개방에 대응한 농업·농촌 발전계획의 하나로 2004년부터 10년간 119조원의 투융자계획을 시행 중
  - 2013년까지 기존의 119조원 농업·농촌 투융자계획에 배정된 7조원, 실적이 부진한 사업을 감액하여 전용하게 되는 3조 1천억 원, 순수한 한-미 FTA 대책에 따른 증액 2조 원 등 총 12조 1천억 원 투입
  - 119조원 투융자계획이 끝나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는 8조 3천억 원을 새로 확보해 지원하게 되고, 2011년에 1조 원을 추가함.
  - 따라서 이미 119조원 계획에 포함되었던 대책을 제외한 순수한 증가분은 2013년까지 추가된 2조 원과 2014~17년까지 새로운 대책으로 지원될 8조 3천억 원, 2011년 추가대책 등 모두 11조 3천억 원

### □ 한·미 FTA 대책의 핵심은 농업의 체질 개선과 경쟁력 제고

- 대책의 핵심은 농업의 체질 개선과 경쟁력 제고 등 중장기 투융자에 두고 단기적 피해보전장치를 보완적으로 운용하는 것임.
  - 농촌 활성화 지원 분야는 한·미 FTA와의 직접적인 관련성이 적으므로 한·미 FTA 대책사업 재정지원계획에는 포함되지 않음.



- 투융자액의 59.6%인 12조 2천억 원이 맞춤형농정(8조9천억)과 신성장 동력 창출(3조3천억) 등 농업의 체질 개선사업에 소요되고, 품목별 경쟁력 제고대책에 총 투융자금액의 34.4%에 해당하는 약 7조원 배정
  - 이 중 축산업 지원이 4조 7천억으로 가장 크며, 다음이 과일 채소 등 원예부문에 2조 3천억 원 지원

#### □ 단기적 피해보전 대책으로 1조 2천억 원 투입 계획

- 단기적 피해보전 대책에는 총 투융자액의 6% 가량인 1조 2천억 원(피해보전직불 7천억 원, 폐업지원 5천억 원)이 사용될 예정
  - 그러나 피해보전직불 및 폐업지원 대상이 증가할 경우 예산 규모를 초과한 집행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피해보전직불(가격차 보상) 제도는 지난 5개년 가격 가운데 최고와 최저를 제외한 3개년 평균 가격의 85% 미만이 될 경우 발동
  - FTA 체결국으로부터의 수입 증가와 그로 인한 가격 하락이 발생한 경우에 한해 발동되며, 보상수준은 발동기준 가격과 시장가격과의 차이의 90%
  - 이는 한·칠레 FTA 대책에서 시행된 발동기준 80%, 보상수준 85%보다 개선된 조치이나, 발동기준의 완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피해보전직불 제도는 10년으로 한·칠레 FTA 대책보다 3년 연장
- 폐업보상은 피해보전직불 발동요건을 갖춘 품목 가운데 시설투자가 이루어진 품목으로 한정되며, 보상수준은 순이익의 3년분. 폐업보상 기간은 협정 이행 초기부터 5년간
  - 한·칠레 FTA 대책에서 폐업보상은 순수입(조수입에서 경영비와 자가노력비 제외)이었으나 순이익(순수입에서 토지용역비와 자본용역비 제외)으로 낮아짐.
  - 이는 한·칠레 FTA 대책 당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복숭아를 비롯하여 과다한 폐업지원이 이루어진 것을 보완하고자 한 조치임.

표 4. 한·미 FTA 대비 농업부문 투융자 규모와 주요 사업\*

단위: 억 원

| 구분               | 2008<br>(A) | 2009~2017<br>(B) | 계<br>(A+B) | 주요 사업                                                                                                                            |
|------------------|-------------|------------------|------------|----------------------------------------------------------------------------------------------------------------------------------|
| 합계               | 14,498      | 189,129          | 203,627    | 총 61개 사업                                                                                                                         |
| 1. 품목별 경쟁력<br>강화 | 6,108       | 63,860           | 69,968     | 33개 사업                                                                                                                           |
| 가. 축산분야          | 3,542       | 43,398           | 46,940     | 축사시설현대화(14,700), 조사료생<br>산기반확충(8,028), 분뇨처리시설<br>(6,418) 등 17개 사업                                                                |
| 나. 원예분야          | 2,508       | 20,314           | 22,822     | 인삼계열화(6801), 원예작물브랜드<br>육성(4,202), 과수고품질생산시설 현<br>대화(3,856) 등 14개 사업                                                             |
| 다. 식량분야          | 58          | 148              | 206        | 발작물 브랜드(170), 고령지감자광<br>역유통(36) 등 2개 사업                                                                                          |
| 2. 한국농업의<br>체질개선 | 6,190       | 115,269          | 121,459    | 26개 사업                                                                                                                           |
| 가. 맞춤형 농정<br>추진  | 3,753       | 84,995           | 88,748     | 농업경영체등록제(690), 경영이양직<br>불(17,895), 교육훈련(2,980), 기계<br>임대(2,980), 후계농육성(26,322),<br>농가단위 소득안정직불(17,200), 재<br>해보험(20,719) 등 8개 사업 |
| 나. 신성장동력<br>확충   | 2,437       | 30,274           | 32,711     | 광역식품클러스터(1,000), 친환경물<br>류센터(500), 농림기술개발(8,930),<br>바이오기술산업화(1,320), 해외시장<br>개척(4,046), 한식세계화(480)등 18<br>개 사업                  |
| 3. 단기적 피해<br>보전  | 2,200       | 10,000           | 12,200     | 2개 사업<br>피해보전직불제(7,200), 폐업지원(5,000)                                                                                             |

\* 2007년 발표된 대책만 포함. 2011년 추가대책 1조 원은 포함되지 않음.

## 5. 향후 검토 과제

### □ 지원정책의 효율성 제고

- FTA 대책의 중복성·비효율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종합대책 필요
  - 한·미 FTA와 한·EU FTA 등 협상이 완료된 FTA는 물론 한·호주 FTA, 한·터키 FTA, 한·뉴질랜드 FTA 등 협상 진행 중인 FTA를 고려하여 기존의 FTA 국내대책과 향후 이루어질 FTA 국내대책의 중복성, 비효율성 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
- FTA 보완대책은 농업의 경쟁력 제고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될 필요 있음.
  - 단기적인 피해보전 대책(소득보전, 폐업보조)의 비중은 매우 낮고 경쟁력 제고 대책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이는 FTA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만을 고려한 것은 아님.
  - \* 예: 한·미 FTA 대책 가운데 인삼, 채소 등 미국으로부터의 수입 가능성이 낮은 품목들에 대한 지원, 경영이양 직접지불, 친환경농업 직접지불, 수출촉진 등

### □ 지원대책의 실효성 제고

- 폐업지원 기간은 5년으로 주요 품목의 FTA 이행기간 15년에 비해 짧고 폐업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이행 초기에 집행되는 것은 농업인의 위험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음.
  - 관세가 완전히 철폐되는 시기로 다가갈수록 수익성이 악화되고 폐업을 희망하는 농업인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음.
  - 이러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폐업지원 기간을 품목별로 관세 철폐 기간과 조화시킬 필요가 있음.
- 피해보전직불 제도도 위와 같은 이유로 10년에서 품목별 이행기간으로 연장하는 방안 검토 필요
  - 주요 농산물에 대한 관세 철폐는 10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기

때문에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한·미 FTA로 인하여 급격한 가격하락은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

- 피해보전직불 초기에는 관세 감축 폭이 작기 때문에 제도의 발동 가능성이 낮음. 관세가 0% 수준으로 수렴하는 이행 말기로 갈수록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발동기간 등에 대한 검토 필요

○ 피해보전직불 제도의 발동기준 가격에 대하여 농업경영인이 감내할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검토 필요

- 피해보전직불 제도의 발동기준 가격은 평균 가격의 85%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축산 및 과수 부문의 관세 수준(주로 45% 이내)과 관세감축 기간(주로 10년 이상)을 고려할 때 발동 가능성이 낮음.
- 가격이 15% 이상 하락할 경우에만 보상이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상당한 소득 감소는 감내할 수밖에 없음.

○ 한·미 FTA 국내대책에서는 폐업지원 대상이 사후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대상품목 선정기준을 보다 구체화하여 핵심 품목 중심으로 범위를 한정할 필요

## □ 보상의 적정성 검토

○ 폐업지원 대상은 고정투자가 이루어지고 장기간에 걸쳐 생산이 이루어지는 품목(예, 과수, 축산 등)으로, 조수입에서 경영비, 자가노력비, 토지용역비, 자본용역비 등을 제외한 ‘순이익’의 3년분을 보상하게 됨.

- 한·칠레 FTA 대책에서는 토지용역비와 자본용역비를 제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상액이 과다하고 신청자도 많았다는 지적
- 순이익 기준으로 변경할 경우 이 문제가 다소 해소될 수 있으나, 폐업을 통한 구조조정 및 국내 가격지지 효과가 감소할 수 있음.

○ 품목별(산업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순이익 3년분을 보상하는 방식이 적절한 것인가 검토 필요

- 축산업의 경우 연도별로 소득률의 차이가 크고 순이익이 낮을 수 있으므로, 품목별 특성을 고려하여 차등화하는 방안 검토 필요

- 금지기간 5년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과수 종류에 따라 식재 후 수확까지 소요기간이 다르듯이 축산업, 인삼 등 특용작물, 경종작물 등이 서로 다른 투자-수익 순환 기간이 있는 점도 고려되어야 함.

## □ 종합적 지원대책 강구(농가단위 소득보전직불 등)

- 폐업지원금 수령 농가가 다른 품목으로 전업할 경우 대체 효과를 고려하면 다른 품목에 피해를 가져다주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
  - 한·미 FTA 등으로 폐업 대상 작목은 증가하고 이러한 품목으로의 전업이 불가능하게 될 경우 폐업 대상이 아닌 품목으로 생산이 집중되고 가격 하락과 경영악화로 이어질 수 있으며, 농가의 작목 선택의 폭이 좁아져 경영 위험도가 증가하는 등의 부작용이 우려
- 폐업은 규모화와 상충될 소지가 있으며, 폐업이 많이 이루어진 지역에서 임차 비용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농지 구입을 통해 규모를 확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임차를 통한 규모 확대가 대안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폐업지원 농지의 증가로 임차료가 상승하는 것은 규모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와 상충
- 폐업 및 소득보전 지원사업 대상 품목과 대상 농가가 증가할 경우 행정적 비용이 크게 증가할 수 있으며, 한·미 FTA, 한·EU FTA, 한·중 FTA 등 증가하는 FTA 협정을 고려하면 중요한 농산물은 대부분 지원대상 품목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음.
  - 수입량, 가격, 단수 등 통계자료를 필요로 하고 통계가 지역별, 농가별로 격차가 클 경우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높기 때문에 행정비용과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강구될 필요 있음.

## □ 기타 사항

- 유보예산 집행
  - 비준 및 이행이 당초 예상보다 늦어지는 등의 이유로 유보되고 있는

---

한·미 FTA 국내대책 예산(예: 2008~2010년간 유보사업 예산 6,145억 원)이 집행에서 제외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검토 필요

○ 보완대책 기간 연장

- 한·미 FTA의 이행기간은 중요한 품목의 경우 15년 이상인 경우가 많으나 국내대책은 10년으로 설정되었고, 한·미 FTA 비준이 지연되고 있으나 예산을 집행하고 있어 당초 계획한 이행기간과 보완대책 집행기간에 차이가 커지고 있음.
- 한·미 FTA 이행기간 중에 정부의 대책은 이미 완료되어 공백상태를 나타내는 기간이 길어질 가능성이 높음.

○ 인력육성 등 소프트웨어에 대한 지원 보완

- 정부의 보완대책의 대부분은 시설투자 등 하드웨어 중심으로 인력개발, 기술개발, 교육 및 훈련, 제도정비(원산지, 이력추적제, 동식물검역, 방역, 유통시스템 등) 소프트웨어 측면은 상대적으로 취약
- 소프트웨어 측면의 보완을 통해 하드웨어 부분과 충분한 시너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할 필요 있음.

○ 보완대책의 수립, 집행, 평가, 수정 및 보완 순환 시스템 구축

- 현재 집행되고 있는 FTA 보완대책은 물론 향후 이어질 중국과의 FTA 등을 고려할 때 지원규모는 크게 증가할 수 있음. 보완대책의 제도적 측면과 경제적 측면에 대한 평가가 강화될 필요 있음.
- 평가시스템 강화로 제도의 수정, 보완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고 현장의 요구를 수용하는 유연한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 있음.

## 부표 1. 한·미 FTA에서 한국의 대미 농산물 관세양허

| HS  | 측시         | 2014.<br>2016*<br>1. 1. | 현행<br>유지<br>+<br>TRQ | 2년 | 3년 | 5년         | 6년 | 7년 | 9년 | 10년        | 12년 | 15년        | 16년 | 17년 | 18년 | 20년      | 예외 | 계             |
|-----|------------|-------------------------|----------------------|----|----|------------|----|----|----|------------|-----|------------|-----|-----|-----|----------|----|---------------|
| 1류  | 29         |                         |                      |    |    | 12         |    |    |    | 7          | 1   | 1          |     |     |     |          |    | 50            |
| 2류  | 4          | 13<br>1*                |                      |    | 2  | 1          |    | 2  |    | 49         | 9   | 15         |     |     |     |          |    | 96            |
| 4류  | 4<br>(7)   |                         | 12                   |    |    |            |    |    |    | 24<br>(1)  | 3   | 8          |     |     |     |          |    | 51<br>(8)     |
| 5류  | 42         |                         |                      |    | 1  | 2          |    |    |    | 3          | 1   | 5          |     |     |     |          |    | 54            |
| 6류  | 47         |                         |                      |    |    |            |    |    |    | 27         |     |            |     |     |     |          |    | 74            |
| 7류  | 23<br>(1)  |                         | 1                    |    |    | 29         |    | 6  |    | 53         | 4   | 15<br>(1)  |     |     |     |          |    | 131<br>(2)    |
| 8류  | 23         |                         | 1                    | 3  |    | 5          | 1  | 5  | 1  | 21         | 6   | 11         |     | 1   |     | (2)      |    | 78<br>(2)     |
| 9류  | 25         |                         |                      |    |    | 6          |    |    |    |            |     | 5          |     |     |     |          |    | 36            |
| 10류 | 13         |                         |                      |    |    | 4          |    | 2  |    | 2          |     | 5          |     |     |     |          | 6  | 32            |
| 11류 | 6          |                         |                      |    |    | 10         |    |    |    | 14         |     | 11         |     |     |     |          | 4  | 45            |
| 12류 | 61<br>(1)  |                         | 1                    | 2  | 26 | 15         |    | 1  |    | 5          |     | 13         |     |     | 7   |          |    | 131<br>(1)    |
| 13류 | 13         |                         |                      |    |    | 6          |    |    |    | 6          |     | 3          |     |     |     |          |    | 28            |
| 14류 | 1          |                         |                      |    |    | 10         |    |    |    | 10         |     |            |     |     |     |          |    | 21            |
| 15류 | 45         |                         |                      |    | 2  | 36         | 1  | 3  |    | 4          | 3   | 1          |     |     |     |          |    | 95            |
| 16류 |            | 7                       |                      |    |    | 1          |    | 1  |    | 6          | 3   | 6          |     |     |     |          |    | 24            |
| 17류 | 5          |                         |                      |    |    | 18         |    | 2  |    | 6          |     |            | 2   |     |     |          |    | 33            |
| 18류 | 10         |                         |                      |    |    | 17         |    |    |    | 2          | 2   |            |     |     |     |          | 2  | 33            |
| 19류 | 11         |                         |                      |    |    | 25         |    |    |    | 10         |     |            |     |     |     |          | 4  | 50            |
| 20류 | 8          |                         |                      |    |    | 53<br>(2)  |    | 8  |    | 32         | 2   | 5          |     |     |     |          |    | 108<br>(2)    |
| 21류 | 3          |                         |                      | 1  | 1  | 43         |    | 5  |    | 14         |     | (2)        |     |     |     |          |    | 67<br>(2)     |
| 22류 | 23         |                         |                      |    |    | 18         |    | 1  |    | 8          |     | 2          |     |     |     |          |    | 52            |
| 23류 | 34         |                         |                      |    |    |            |    | 1  |    | 5          | 4   |            |     |     |     |          |    | 44            |
| 24류 |            |                         |                      |    |    |            |    |    |    | 23         |     | 2          |     |     |     |          |    | 25            |
| 29류 |            |                         |                      |    | 1  | 1          |    |    |    | 1          |     |            |     |     |     |          |    | 3             |
| 33류 | 32         |                         |                      |    |    |            |    |    |    | 2          |     |            |     |     |     |          |    | 34            |
| 35류 | 12         |                         |                      |    |    | 4          |    | 4  |    | 6          | 2   |            |     |     |     |          |    | 28            |
| 38류 | 11         |                         |                      |    |    | 1          |    |    |    | 1          |     |            |     |     |     |          |    | 13            |
| 41류 | 35         |                         |                      |    |    |            |    |    |    | 2          |     |            |     |     |     |          |    | 37            |
| 43류 | 12         |                         |                      |    |    |            |    |    |    |            |     |            |     |     |     |          |    | 12            |
| 50류 | 16         |                         |                      |    |    |            |    |    |    |            |     |            |     |     |     |          |    | 16            |
| 51류 | 11         |                         |                      |    |    |            |    |    |    |            |     |            |     |     |     |          |    | 11            |
| 52류 | 10         |                         |                      |    |    |            |    |    |    |            |     |            |     |     |     |          |    | 10            |
| 53류 | 9          |                         |                      |    |    |            |    |    |    |            |     |            |     |     |     |          |    | 9             |
| 계   | 578<br>(9) | 20<br>1*                | 15                   | 6  | 33 | 317<br>(2) | 2  | 41 | 1  | 343<br>(1) | 40  | 108<br>(3) | 2   | 1   | 7   | 0<br>(2) | 16 | 1,531<br>(17) |

주: ( )의 수는 세번이 추가된 품목의 수이고 \*는 2016년 1월 1일부터 관세가 철폐되는 품목(돼지고기 냉동/기타)

부표 2. 한·미 FTA 농산물 관세율 쿼터(부록 2-나-1의 관리대상 품목)

|                             | 품목명(세번기준 품목 수)    | 양허유형   | 수입쿼터(TRQ) 물량 |                                           |                |
|-----------------------------|-------------------|--------|--------------|-------------------------------------------|----------------|
|                             |                   |        | 제공기간         | 최초연도<br>제공물량(톤)                           | 연간 증량          |
| 1                           | 분유(탈지/전지), 연유(11) | 현행유지   | 제한 없음        | 5,000                                     | 복리 3%          |
| 2                           | 유장분말-식용(7)        | 10년 철폐 | 9년           | 3,000                                     | 복리 3%          |
| 3                           | 치즈(5)             | 15년 철폐 | 14년          | 7,000                                     | 복리 3%          |
|                             | 체다치즈(세번분리)        | 10년 철폐 | 9년           |                                           |                |
| 4                           | 조제분유-유아용(2)       | 10년 철폐 | 9년           | 700                                       | 복리 3%          |
| 5                           | 버터(2)             | 10년 철폐 | 9년           | 200                                       | 복리 3%          |
| 6                           | 천연꿀(1)            | 현행유지   | 제한 없음        | 200                                       | 복리 3%          |
| 7                           | 보조사료(4)           | 12년 철폐 | 11년          | 5,500                                     | 복리 3%          |
| 8                           | 사료용근채류(1)         | 15년 철폐 | 14년          | 200,000                                   | 고정             |
| 9                           | 식용감자(1)           | 현행유지   | 제한 없음        | 3,000                                     | 복리 3%          |
| 10                          | 식용대두(1)           | 현행유지   | 제한 없음        | 1년차: 10,000<br>2년차: 20,000<br>3년차: 25,000 | 4년차부터<br>복리 3% |
| 11                          | 오렌지(1)            | 현행유지   | 제한 없음        | 2,500                                     | 복리 3%          |
| 12                          | 인삼(4)             | 18년 철폐 | 17년          | 5.7                                       | 복리 3%          |
| 13                          | 겉보리/쌀보리(2)        | 15년 철폐 | 14년          | 2,500                                     | 복리 2%          |
| 14                          | 맥아 및 맥주맥(2)       | 15년 철폐 | 14년          | 9,000                                     | 복리 2%          |
| 15                          | 옥수수 전분(1)         | 15년 철폐 | 14년          | 10,000                                    | 복리 3%          |
| 16                          | 텍스트린(2)           | 12년 철폐 | 11년          | 14,000                                    | 복리 3%          |
| 실품목 16개<br>(HS 10단위 기준 47개) |                   |        |              |                                           |                |



## 부표 3. 한·미 FTA 농산물 긴급관세(ASG) 협상결과

|                   | 품목(세번기준 품목 수)  | 초기연도<br>발동기준(톤) | 최종연도<br>발동기준(톤) | 적용기간(년)        |
|-------------------|----------------|-----------------|-----------------|----------------|
| 1                 | 쇠고기(6)         | 270,000         | 354,000         | 15             |
| 2                 | 돼지고기(2)        | 8,250           | 13,938          | 10             |
| 3                 | 마늘(4)          | 1,148           | 2,297           | 18             |
| 4                 | 양파(2)          | 2,904           | 5,808           | 18             |
| 5                 | 고추(5)          | 827             | 1,655           | 18             |
| 6                 | 녹두, 팔(2)       | 238             | 714             | 15             |
| 7                 | 고구마(4)         | 212             | 530             | 10             |
| 8                 | 기타 서류-칩뿌리 등(1) | 30              | 30              | 10             |
| 9                 | 사과(1)          | 9,000           | 20,429          | 후지(23), 기타(10) |
| 10                | 녹차(2)          | 8.3             | 16.6            | 18             |
| 11                | 생강(1)          | 573             | 1,147           | 18             |
| 12                | 맥주맥/맥아(2)      | 9,000           | 11,875          | 15             |
| 13                | 보리(2)          | 2,500           | 3,299           | 15             |
| 14                | 옥수수-팝콘용(1)     | 5,112           | 11,246          | 7              |
| 15                | 옥수수-기타(1)      | 187,547         | 412,603         | 7              |
| 16                | 메밀/기타 곡물(2)    | 250             | 750             | 15             |
| 17                | 기타 가공곡물(5)     | 128             | 299.10          | 15             |
| 18                | 감자 분/플레이크(2)   | 5,000           | 6,524           | 10             |
| 19                | 옥수수전분(1)       | 10,000          | 15,126          | 15             |
| 20                | 감자전분(1)        | 239             | 717             | 15             |
| 21                | 매니옥전분(1)       | 433             | 1,299           | 15             |
| 22                | 고구마전분(1)       | 202             | 606             | 15             |
| 23                | 기타 전분(1)       | 53              | 159             | 15             |
| 24                | 낙화생(2)         | 140             | 281             | 18             |
| 25                | 참깨(1)          | 3,561           | 7,121           | 18             |
| 26                | 참기름(1)         | 30              | 61              | 18             |
| 27                | 인삼(16)         | 62              | 103             | 20*, 18**      |
| 28                | 설탕(2)          | 833,071         | 1,460,794       | 20             |
| 29                | 발효주정(1)        | 236             | 708             | 15             |
| 30                | 텍스트린/변성전분(2)   | 14,000          | 19,379          | 12             |
| 실품목 30개(세번기준 75개) |                |                 |                 |                |

\* 수삼 및 홍삼·백삼 등 뿌리삼류(본삼, 미삼, 잡삼): 20년

\*\* 홍삼분, 홍삼엑스, 홍삼타블렛 등 홍삼가공품: 18년

## **「KREI 농정포커스」 발행 목록**

### **2011년**

- 제4호    한·미 FTA, 농업분야의 영향과 과제 (최세균)
- 제3호    농산물 수출증대의 요인과 경제적 파급효과  
          - 신선농산물을 중심으로 - (문한필, 김경필, 어명근, 전형진)
- 제2호    2011년산 쌀 수급 전망 및 시사점 (한석호, 승준호)
- 제1호    2011년 김장시장 분석과 전망 (이용선, 서대석)

---

KREI 농정포커스 제4호  
한·미 FTA, 농업분야의 영향과 과제

---

등 록 제6-0007호(1979. 5. 25)  
인 쇄 2011. 12. 22  
발 행 2011. 12. 22  
발 행 인 이동필  
발 행 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30-71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 4-102  
02-3299-4000 <http://www.krei.re.kr>  
인 쇄 문원사  
02-739-3911 [munwonsa@hanmail.net](mailto:munwonsa@hanmail.net)

---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